

#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

##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ARTERA

당사는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(예비입주자 포함)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.

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,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\* 정당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및 예비추첨 진행이 가능하며, 부적격이 확정된 당첨자는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### 당첨자(예비입주자) 서류제출 및 계약 일정

구분	정당당첨자	예비입주자	장소 및 신청 방법
제출기간	2025.04.26.(토) ~ 04.29.(화) 10:00 ~ 16:30	2025.04.30.(수) ~ 05.02.(금) 10:00 ~ 16:30	<b>* 사전 방문예약제 운영</b> - 당사 견본주택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 - 서류 접수 예약 시스템 : <b>2025.04.23.(수) 10시</b> 이후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- 정당 계약 예약 시스템 : <b>2025.04.30.(수) 10시</b> 이후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
계약기간	2025.05.07.(수) ~ 05.10.(토) 10:00 ~ 16:30	서류제출 대상자, 추첨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	

\* 사전 방문 예약 시 당첨자의 연락처가 청약 신청 시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자격확인 서류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
자격확인 필수서류	신분증	청약자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모바일 신분증 불가(실물 지참 필수)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•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 계약용 * 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제출 불가)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 발급 *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, *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 -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

### 추가 필요서류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
추가 필요서류 (가점제, 예비입주자)	복무 확인서	청약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
	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	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* (청약홈) 청약홈 > 청약자격확인 > 청약통장 > 순위확인서 발급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>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(청약통장 가입은행) 창구 방문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
	당첨사실 확인서	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* (청약홈) 청약홈 > 청약소통방 > APT당첨사실 조회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,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*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 -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* 해외 체류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비속	•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*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 -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 * 단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단신부임 입증서류 (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)	청약자	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-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*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	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청약자 및 세대원	-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* 비자 발급 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출입국사실 증명원	배우자 및 세대원	•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청약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*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
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자	•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, "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
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위임장	청약자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견본주택에 비치)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• 용도 :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 * 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제출 불가) * 대리인 접수(계약)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, 서명 또는 날인 * 모바일 신분증 불가(실물 지참 필수)

\*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5.04.04.(금)) 이후 발행분]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
\* 여권 제출 시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바랍니다.

\*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격여부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
\*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\*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\*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